

전주지방법원 2024. 5. 23 선고 2023나1359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4. 5. 23 선고 2023나13599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3. 4. 5 선고 2021가단2373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4. 18.

판결 선고2024. 5. 23.

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3. 4. 5. 선고 2021가단23737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, 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2020. 8. 3. 접수 제83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1987. 7. 2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4쪽 5, 6, 7, 9행의 "피고 O"를 "피고 C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5쪽 4행의 "의무가 있다."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"의무가 있다[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(갑 제2호증의 1 중 5쪽)에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, 이는 당시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며, 달리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등기건물과 사실상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등기부동산만 원고의 단독소유로 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

보는 것이 타당하다]."

○ 제1심판결 7쪽 9~13행의 "그러나.....부족하다."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"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내세우는 부동산매매협의약정재계약서(을 제7호증)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,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(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) 위 부동산매매협의약정재계약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,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8~20, 22~26호증 등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"

3. 추가 판단

피고들은, 설령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등기부동산 및 미등기건물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J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앞서 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J의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가 J의 실제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 2 생략)와 다른 사실은 인정되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, 달리 J의 불참 등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.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강화석

판사김진아

판사신서영

별지